'26년 3차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본청분야) 필기시험 합격자 및 제출서류 공고

2026년 3차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본청 분야 필기시험 합격자 및 제출서류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3일

해 양 경 찰 청 장

1 필기시험 합격자(응시번호순)

□ 경위공채_해양_남자 : 16명

연번	응시번호	연번	응시번호
1	50110013	9	50130006
2	50110014	10	50130011
3	50110022	11	50130017
4	50120007	12	50130020
5	50120012	13	50130026
6	50120013	14	50130030
7	50120018	15	50130031
8	50130005	16	50140003

□ 경위공채_해양_여자 : 6명

연번	응시번호	연번	응시번호
1	50220003	4	50230012
2	50220004	5	50230014
3	50230001	6	50230015

□ 경위공채_일반_남자 : 16명

연번	응시번호	연번	응시번호
1	50310005	9	50310049
2	50310010	10	50310061
3	50310015	11	50310079
4	50310018	12	50320002
5	50310019	13	50320003
6	50310028	14	50320009
7	50310043	15	50320012
8	50310046	16	50330011

□ 경위공채_일반_여자 : 6명

연번	응시번호	연번	응시번호
1	50410004	4	50430007
2	50410022	5	50440002
3	50430001	6	50440003

□ 해수산계고_항해 : 5명

연번	응시번호	연번	응시번호
1	60300002	4	60300009
2	60300003	5	60300015
3	60300004		

□ 해수산계고_기관 : 2명

연번	응시번호	연번	응시번호
1	60400003	2	60400004

2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안내

□ **제출 기간:** '26. 11. 13.(금) 10:00 ~ 18.(수) 18:00까지 * 마감일 제외 24시간 가능

□ **제출 방법:**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https://gongmuwon.gosi.kr) 이용

○ 서류는 [붙임 1] 『제출서류 총괄표』를 참조하여 목록에 해당하는 PDF 파일(파일명: 응시번호_응시자 성명)을 각각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두 가지의 서류를 한 페이지에 **편집/모아찍기 금지**(문자인식 불가)

○ 제출 기한 내에는 등록한 서류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으나, 제출 기한 종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제출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특이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경찰청 인재선발계(032-835-2336, 2436, 2536, 2636)에 연락하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목록**

① 제출서류 총괄표 : 전원 [붙임 1] 제출

② 응시자격 요건 증빙서류 : 해수산계고 분야만 제출

연번	분야	제 출 서 류	수량
1	해수산계고	◦ 채용시험 추천서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성적증명서 ※ 전문교과 이수 확인 불가 시 [붙임 6]의 전문교과 이수 확인서 제출 ◦ 재학·휴학증명서 등 재적 확인이 가능한 입증서류 ◦ 해기사 면허증 사본 또는 면허발급 기관에서 발급하는 필기시험 합격 증빙자료	각 1부

③ 주민등록초본(상세, 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 전원 제출

④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전원 [붙임 2] 제출

※ 마약류 정밀검사 의뢰서는 **지정된 병원(별첨 1)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임**

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 전원 제출

⑥ 최종학력 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또는 재학증명서 사본: 전원 제출

※ 학교 재학 중인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 해수산계고는 ②응시자격 요건 증빙서류와 중복되므로 제출 불필요

⑦ 면접 가산 자격증 시스템 입력 및 사본 제출: 해당자 제출([붙임 3] 참조)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전원 [붙임 4] 작성 제출

⑨ (현역)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전역신청 내용 확인서 : 해당자 [붙임 5] 작성 제출

⑩ 귀화 전 범죄기록증명원 및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 귀화자만 제출

※ 위의 서류는(④번 제외)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이용하여 시스템 제출, ④신체검사서는** 봉인 상태로 발급받아 **종합적성검사 시 현장 제출**

□ 제출 서류별 주의사항

○ (공통)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서류(학위·경력증명서·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는 반드시 원본과 번역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통)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경우에 따라 향후 5년간 임용시험에 대한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① 제출 서류 목록 총괄표

1) 응시자격 요건 증빙서류 제출 대상자는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

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및 취득예정인 면접 가산 자격증에 한해 적성검사 시 현장 제출

② 응시자격 요건 증빙자료 : 해수산계고 분야만 제출

1)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성적증명서로 전문교과 이수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붙임 6] 「해수산계고 전문교과 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졸업자의 재적 입증서류는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해기사 면허증 사본은 앞면·뒷면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필기시험만 합격한 경우에는 해기사면허 발급기관에서 발급하는 필기시험 합격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주민등록초본(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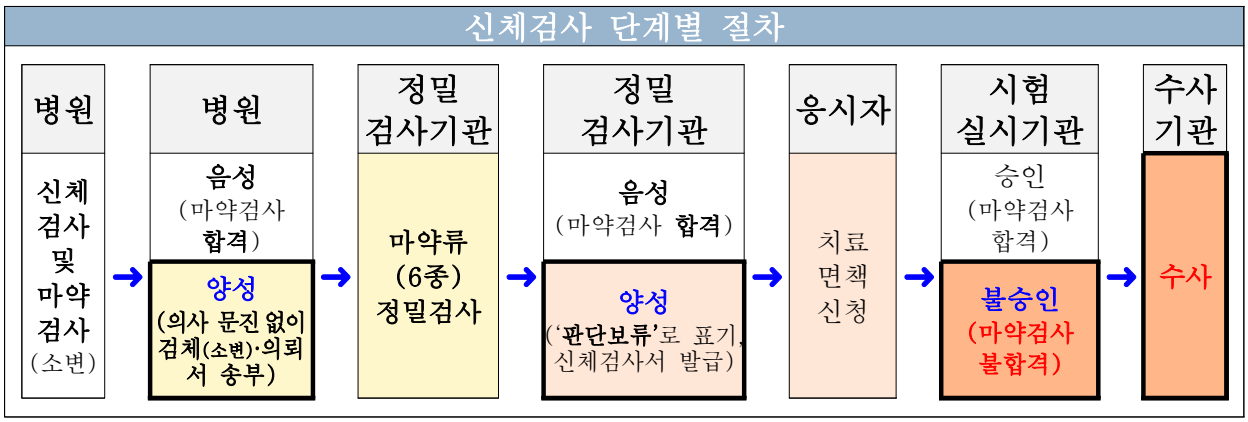
1)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전체가 표기되어야 하며,** 남자는 **병역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2) **발급본만 인정**됩니다.('열람용'은 인정불가)

④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붙임 2] 참조)

1)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 중 마약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 유효하게 발급받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로 평가합니다.

* 마약검사 가능병원 및 색각 관련 정밀검사 병원 목록 **[별첨2 참조]**



2) 병원 방문 전 반드시 마약검사 가능여부 확인 후 **신분증, 응시표, 사진 및 검사비용** 등을 지참하고,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3) **모든 응시자는 신체검사 시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관련 마약류 정밀검사 의뢰서' 작성해서 병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붙임 2] 양식 준수)

4) 몸에 부착된 테이핑은 신체검사 전에 제거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5)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신체검사서에 기재된 **판정일로부터 4월까지이며, 적성·신체검사 종료 예정일**까지 유효해야 합니다.

6) 검사 항목의 결과는 모두 기재되어야 하며, 특히 **청력검사 후 정상 판정에 대한 범위(기준 dB) 숫자 표시, 검진기관명, 담당의사 성명, 담당의사 서명은 필수 기재**되어야 합니다.

7) **색각이상자의 경우** 신체검사서 제출 시 종합병원 등에서 반드시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정밀검사**를 받아 검사 결과지, 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8) 신체검사의 적격성 확인을 위해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신체검사서는 반드시 검사를 시행한 병원에서 봉인상태로 발급을 받아 적성검사 시 제출해야 합니다.(임의 개봉 시 인정 불가)

10) 문신을 이유로 '신체검사서'에서 **판정보류**를 받거나 **문신을 자진 신고한 응시자**는 신체검사 당일 기초진술서(사진 촬영 포함) 작성 후 외부위원을 포함한 '**신체검사 심사위원회**'(별도 일시 지정)를 구성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1) 초졸 또는 중졸인 경우 최종학교 생활기록부 제출

2) 외국소재 고등학교 졸업자는 국내소재 최종학교(초등중학교) 생활기록부 제출

3) 발급본만 인정됩니다.('열람용'은 인정불가)

⑥ **최종학력 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또는 재학증명서 사본**

1)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해당 서류는 면접시험 평가위원 제척·기피를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며,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3) 학교 재학 중인 경우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⑦ **면접 가산 자격증**([붙임 3] 배점기준표 참조, **최대 5점까지 인정**)

1) 인명구조자격증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및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개정에 따라 **인명구조요원(강사)에 대해서는 '25.12.21.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사람(갱신 포함)만 '28.12.20. 까지 자격을 인정**(해양경찰청이 지정한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제도 폐지, '25.12.21.)

2) 자격증 사본은 앞면·뒷면을 모두 제출해야 하며, 자격증 발급기관, 성명, 생년월일, 취득(발급)일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3)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상 면접 가산 자격증 입력 방법

※ **입력 가능기간**: '26. 11. 13.(금) 10:00 ~ 18.(수) 18:00까지 (기한 엄수)

※ **면접 가산 자격증 취득 예정인 경우 해당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예정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한 자격증에 한해 적성검사 시(11.21.(토)) 현장 제출이 가능합니다.**

○ ❶본인 해당하는 분야, 점수, 자격증명 선택 → ❷자격/면허 번호, 발급기관, 취득일자 입력 → ❸(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의 경우 비고란에 점수 추가 입력

○ 적성검사 전까지 취득 예정인 자격증은 자격/면허 번호에 취득예정으로 입력 후 체크 표시, 취득일자는 취득예정일자로 입력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상 면접 가산 자격증 입력 화면(참고용)>

4)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자격취득확인서'도 가능합니다.

5) 가산점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에 입력한 점수가 아닌 **응시자가 제출한 자격증 사본을 통해 인정**되며, 자격증은 **최종(면접)시험예정일까지 자격이 유효**해야 합니다.

6) 적성검사 전까지 **취득 예정인 자격증**은 **반드시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기재한 자격증에 한해 적성검사 시 현장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7) **외국어능력자격증**은 **최종시험예정일 기준으로 2년 이내 것만 인정**됩니다.

8) 토익시험 성적표의 경우 발급번호(registration number) 16자리를 기재해야 합니다.

9) 동일분야 자격증 복수 제출 시 가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을 인정하며 채용자격요건과 동일분야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0) **면접 가산점**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가산 점수는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점수 공개(12.4.(금)) 및 수정 기간(12.4.(금)~12.7.(월))을 거쳐 확정**되며, 공개(수정) **기간 종료 후에는 확인 및 수정이 불가**합니다.

⑧ **개인정보 제공, 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 서명은 이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반드시 정자로 서명**해야 합니다.

2) 동의서는 두쪽 **모아찍기 금지**입니다.

⑨ **(현역)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전역신청 내용 확인서**

1) 軍 현역 복무자는 [붙임 5] 「(현역)개인정보 제공동의 및 전역신청 내용 확인서」 1부를 반드시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는 현역 복무중인 최종합격자가 교육원 입교일 전에 전역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각 군 담당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2)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교육원 입교 전 전역 불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⑩ **귀화 전 범죄기록증명원 및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 귀화자만 제출

1) **귀화 전 범죄기록증명원:**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발급까지 추가 소요 기간이 필요할 경우 응시한 청에 사전 연락 필요

2)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 정부24에서 발급 신청

3 향후 일정 안내

□ **적성검사 :** ’26. 11. 21.(토)

□ **신체 · 체력검사 :** ’26. 11. 23.(월) ~ 11. 26.(목)

○ 응시분야 별 상세일정 등 안내 사항은 해양경찰청, 각 지방해양경찰청 누리집 및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26. 11. 13.(금) 17:00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 **기타 사항은 응시분야 별 각 지방청 및 해양경찰청에 문의바랍니다.**

○ (해양경찰청 인재선발계) 032-835-2336 / 2436 / 2536 / 2636

○ (중부지방청 기획운영과) 032-728-8916

○ (서해지방청 기획운영과) 061-288-2521

○ (남해지방청 기획운영과) 051-663-2416

○ (동해지방청 기획운영과) 033-680-2416

○ (제주지방청 기획운영과) 064-801-2416

붙임 1 제출서류 총괄표

'26년 3차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 서류 목록 총괄표

응시분야	응시번호	성명	연락처
			휴대폰) 비상연락처)

○ 제출서류

편철 순서	제출대상	제 출 서 류 명	제출여부 (O, X)	비고
1	합격자 전원	응시자격 요건 증빙서류(해당사항에 반드시 동그라미) 1) 경력 2) 자격증 2-1) 자격증+경력 3) 학위 3-1) 학위+경력	예시) O 또는 X	
2		주민등록초본(상세) 1부		
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적성검사 시 현장 제출	
4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1부		
5		최종학력 증명서 사본 1부		
6		면접 가산 자격증(사본) 각 1부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입력한 자격증에 한함		해당자만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8	군복무자 (현역자)	(현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전역신청 내용 확인서		해당자만
9	귀화자	귀화 전 범죄기록증명원 및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		해당자만

위 기재 사항은 본인이 직접 작성·제출하였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행위 등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붙임 2 신체검사 평가기준, 신체검사서, 정밀검사 의뢰서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4]
신체검사의 평가기준 (제28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 관련)

구분	내용 및 기준
체격 및 질환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팔다리는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色神)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 색신이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어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Hg)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Hg) 미만인 것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문신	시술 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비고 : 체격 항목 중 팔다리가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표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 (제6조 제1항 관련)

평가항목	내 용	신체검사기준(불합격 판정기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 가능한 상태	팔다리와 손·발가락	팔다리와 손·발가락이 강직, 절단 또는 변형된 기형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진단을 받지 못한 사람
	척추만곡증 (허리휘는 증상)	X-RAY촬영 결과 20도 이상 허리가 기울어져 있는 자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상지관절의 정상여부	상지 3대 관절(손목·팔꿈치·어깨관절)을 앞과 위 아래로 이동시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 중 상지의 3대 관절이 불완전하거나 관절의 기능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하지관절의 정상여부	하지 3대 관절(발목·무릎·고관절)을 좌우로 돌리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 중 하지의 3대 관절이 불완전하거나 관절의 기능 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별지 제5호서식]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시험실시기관	② 응시계급 · 분야	응시번호	성 명		사 진 (3.5㎝ × 4.5㎝) ※ 압인 또는 계인
			주민등록번호		

검 사 내 용

키		cm	체 중		kg
허리둘레		cm	혈 압		
(교정)시력	좌: ( )	색 신		청 력	좌: ( )dB
	우: ( )	(색 각)			우: ( )dB
종 양 질 환			이비인후질환		
호 흡 기 질 환			심 혈 관 질 환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신장/비뇨기계질환		
내 분 비 질 환			혈 액 질 환		
신 경 질 환			피 부 질 환		
근골격계 질환			안 질 환		
정 신 질 환			흉부X선 검사		
직무에 적합한 신체			기타 특이사항		
문 신					

약 물 검 사

필로폰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코카인		아편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합격 여부	[ ]합 격 [ ]판 정 보 류	합격 사유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판정일로부터 4월

210㎜×297㎜ 백상지(80g/㎡)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①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해양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등)

   나. ②란에는 응시한 계급과 분야를 적어야 합니다.

   (예: 경감 변호사, 경위 헬기조종, 경장 함정요원, 순경 공채 등)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계인(걸침도장)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임산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산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에 해당하지 않음
   -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 '만성골수성백혈병' 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에 따라야 합니다.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관련 마약류 정밀검사 의뢰서

<병원 작성 항목: 마약류 정밀검사 의뢰서>

의뢰기관명		수검자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남☐ 여☐
요양기관번호		Chart No.		과명/병동		검체 채취 담당	(서명)
소변 채취일시	년 월 일 (오전, 오후) :			담당의사	(서명) ☎		
검사의뢰일시	년 월 일 (오전, 오후) :						
마약류 6종 간이검사 결과(양성 약물에 체크)							
☐ 필로폰(메스암페타민) ☐ 엑스터시(MDMA) ☐ 대마 ☐ 코카인(벤조일렉고닌) ☐ 케타민 ☐ 아편(모르핀)							
소변 검체 채취방법	• 멸균된 깨끗한 plastic container (ex: 15 mL conical tube)에 보존제 없이 5~10mL 이상 채뇨 • 수검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을 정확히 기재 • 채뇨 시 희석 또는 불순물을 첨가하지 않는지 확인 • 정밀검사를 위한 검체는 1차 간이검사(선별검사)에서 양성인 검체를 그대로 의뢰						
정밀검사기관	(기관명) / (주소) / (FAX) / (TEL) / (요양기관번호)						

<수검자(응시자) 작성 항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병원에서는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해양경찰청 및 마약 정밀검사 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구분	수집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개인정보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응시 지방청, 응시번호	채용 신체검사	**판정일로부터 4개월**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채용시험 불합격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기재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구분	수집항목	수집 목적	보유·이용기간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채용 신체검사	**판정일로부터 4개월**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경찰공무원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합니다.

☐ 민감정보 수집·이용

구분	수집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민감정보	채용 신체검사 결과(마약검사 결과 포함)	채용 신체검사	**판정일로부터 4개월**

※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채용시험 불합격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기재된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기관	제공항목	제공 목적	보유기간
마약 정밀검사 기관, 해양경찰청 및 중부·서해·남해·동해·제주 지방해양경찰청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응시 지방청, 응시번호, 신체검사 결과(마약검사 결과 포함)	채용 신체검사(마약검사 포함), 신체검사 합격여부 판단, 수사기관 제공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년 이내**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 채용시험 불합격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기재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수검자(응시자) 작성 항목: 마약류 정밀검사 의뢰 동의서>

상기 마약류 6종에 대한 간이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정밀검사 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게 되고,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정밀 마약검사를 실시할 수 없으며, 신체검사 판정결과 '판정보류'로 처리되어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되게 됩니다.** 정밀검사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관련 비용은 신청자(응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위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마약 정밀검사 의뢰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수검자(응시자) 작성 항목>

20 . . .

응시분야: 응시지방청: 응시번호: 성명: (서명)

붙임 3 면접시험 가산 자격증 배점기준표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표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가산 자격증 배점기준표(제6조 제9항 관련)

점수 / 분야	5 점	3 점	2 점	1 점
운 전	-	-	-	- 1종대형, 1종보통 - 특수면허 (대형 견인차에 한함)
무 도		- 무도 4단 이상	- 무도 3단	- 무도 1·2단
정보처리 (전 산)	- 정보관리기술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정보처리기사 - 정보보안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정보보안산업기사	- 정보처리기능사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전자·통신 (통 신)	- 정보통신기술사 - 전자계산기기술사 - 전자응용기술사	- 통신설비·전자기능장 - 전자계산기·전자기사 - 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정보통신·방송통신기사	- 전자계산기제어·전자산업기사 - 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정보통신·통신선로·방송통신산업기사	- 전자기능사 - 전자계산기기능사 - 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통신선로· 통신기기·방송통신기능사
사무관리				- 컴퓨터활용능력 1·2급 - 워드프로세서(단일등급|또는 1급) - E-Test 프로페셔널 1급(워드, 엑셀, PPT 중 1)
법무·특허	- 변호사, 변리사	- 법무사	-	-
세무·회계	- 공인회계사	- 세무사, 관세사	- 전산세무 1·2급 - 전산회계운용사 1급	- 전산회계 1·2급 - 전산회계운용사 2·3급
차량정비	-	- 자동차정비기사·기능장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 동력기계정비기능사
화 약 류	- 화약류관리기술사	- 화약류제조·화약류관리기사	- 화약류제조·화약류관리산업기사	-
재 난	- 건설안전기술사	- 위험물기능장 - 건설안전·산업안전·소방설비·가스기사	- 위험물산업기사 - 건설안전·산업안전·소방설비·가스산업기사	- 위험물기능사 - 가스기능사
안전관리	수상구조사 1급 이상	-	인명구조(요원)강사 수상구조사 2급	- 인명구조요원
의 료	-	- 응급구조사 1급	- 응급구조사 2급 - 상담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 간호사 - 상담심리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국 어	-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1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78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69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69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53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60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37점 이상

점수 / 분야	5 점	3 점	2 점	1 점
영 어	-	- TOEIC 850 이상 - TOEFL(IBT 92, PBT 580 이상) - TEPS 800 이상(New TEPS 452 이상) - FLEX 763 이상 - TOSEL(중앙일보 TOSEL) 780 이상 - PELT(main) 415 이상 - G-TELP Level 2 82 이상 - IELTS 5.5 이상	- TOEIC 750 이상 - TOEFL(IBT 71, PBT 527 이상) - TEPS 700 이상(New TEPS 386 이상) - FLEX 654 이상 - TOSEL(중앙일보 TOSEL) 690 이상 - PELT(main) 340 이상 - G-TELP Level 2 69 이상 - IELTS 5.0 이상 - OPIc AL 등급	- TOEIC 650 이상 - TOEFL(IBT 57, PBT 487 이상) - TEPS 600 이상(New TEPS 327 이상) - FLEX 553이상 - TOSEL(중앙일보 TOSEL) 600 이상 - PELT(main) 240 이상 - G-TELP Level 2 56 이상 - IELTS 4.5 이상 - OPIc IH 등급
일 어	-	- J.L.P.T N1 - J.P.T 850 이상	- J.L.P.T N2 - J.P.T 750 이상	- J.L.P.T N3 - J.P.T 650 이상
중 국 어	-	- 신 H.S.K 6급 - 신 BCT(B) 271 이상, 신 BCT(B) L/R 901 이상 - 구 BCT(B) 901 이상	- 신 H.S.K 5급 - 신 BCT(B) 241 이상, 신 BCT(B) L/R 801 이상 - 구 BCT(B) 801 이상	- 신 H.S.K 4급 - 신 BCT(B) 181 이상, 신 BCT(B) L/R 601 이상 - 구 BCT(B) 601 이상
잠 수	- 잠수기능장 - 잠수산업기사	- 잠수기능사	-	-
레 저	-	-	-	- 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1·2급 - 요트조종면허
해 양	- 해기사 1·2급(항해, 기관, 운항사)	- 해기사 3급(항해, 기관, 운항사)	- 해기사 4급(항해, 기관, 운항사)	- 해기사 5·6급(항해, 기관, 운항사)
수산·어로	- 수산양식기술사 - 어업기술사	- 수산양식기사 - 어업생산관리기사	- 수산양식산업기사 - 어로산업기사	- 수산양식기능사
드 론	-	-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기·무인 헬리콥터·무인 멀티콥터·무인 비행선 中 1) 실기평가 조종자	-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기·무인 헬리콥터·무인 멀티콥터·무인 비행선 中 1) 지도조종자	-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기·무인 헬리콥터·무인 멀티콥터 中 1) 조종자(1종, 2종) -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선)조종자
환 경	- 폐기물처리기술사	- 해양환경·대기환경·수질환경·폐기물처리기사	- 대기환경·수질환경·폐기물처리 산업기사	- 환경기능사

※ 비고

1. 무도분야 자격증은 다음 각 목의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나.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
   다.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2.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또는 갱신기간이 도과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어학능력자격증(국어, 외국어)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
3. 동일분야 자격증 복수 제출시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을 인정하고 채용자격 요건과 동일분야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4. 인명구조강사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것만을 인정한다.

◦ 무도가산점 인정 단체

<table>
<tr><th>구분</th><th>인정단체</th></tr>
<tr><td>대한체육회 가맹단체
(12)</td><td>
<table>
<tr><td>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td><td>대한유도회</td><td>대한검도회</td></tr>
<tr><td>대한가라테연맹</td><td>대한택견회</td><td>대한우슈협회</td></tr>
<tr><td>대한복싱협회</td><td>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td><td>대한킥복싱협회</td></tr>
<tr><td>대한주짓수회</td><td>대한씨름협회</td><td>대한레슬링협회</td></tr>
</table>
※ 「대한크라쉬연맹」은 '23. 12. 31.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td></tr>
<tr><td>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 (48)</td><td>
<table>
<tr><td>대한기도회</td><td>재남무술원</td><td>대한합기도협회</td></tr>
<tr><td>한국정통합기도협회</td><td>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td><td>대한신무합기도협회</td></tr>
<tr><td>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td><td>대한합기도총연맹</td><td>KOREA합기도중앙협회</td></tr>
<tr><td>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td><td>대한합기도연맹</td><td>대한용무도협회</td></tr>
<tr><td>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td><td>국제특공무술연합회</td><td>세계합기도무도연맹</td></tr>
<tr><td>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td><td>국제당수도연맹</td><td>대한해동검도협회</td></tr>
<tr><td>대한특공무술협회</td><td>세계경찰무도연맹</td><td>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td></tr>
<tr><td>대한특공무술연맹</td><td>한국해동검도협회</td><td>대한무에타이협회</td></tr>
<tr><td>세계합기도연맹</td><td>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td><td>한국경호무술협회</td></tr>
<tr><td>국술원</td><td>한국특공무술협회</td><td>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td></tr>
<tr><td>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td><td>ITF태권도협회</td><td>특전사 특공무술</td></tr>
<tr><td>대한합기도총협회</td><td>한국킥복싱협회</td><td>대한특전무술협회</td></tr>
<tr><td>대한종합격투기연맹</td><td>천무극협회</td><td>대한삼보연맹</td></tr>
<tr><td>경찰무도교육원</td><td>대한삼단봉협회</td><td>대한프로복싱협회</td></tr>
<tr><td>세계프로킥복싱무에타이총연맹</td><td>대한경찰경호무도연맹</td><td>대한이종격투기연맹</td></tr>
<tr><td>대한특공무술총연합회</td><td>대한크라브마가협회</td><td>대한권투협회</td></tr>
</table>
※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세계태권무도연맹 ▵한국해동검도연합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는 '25. 2. 6.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세계합기도협회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現대한민국합기도지도자협회) ▵대한검도연합회 ▵한국무예진흥원 ▵세계용무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회 ▵대한프로태권도협회 ▵대한민국특공무술중앙협회 ▵대한민국경찰무도연맹은 '25. 7. 11.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td></tr>
<tr><td>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1)</td><td>택견보존회</td></tr>
</table>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지정단체

단체명	전화번호	단체명	전화번호
대한적십자사	02-3705-3617	(사)대한수중 핀수영협회	02-420-4293
(재)한국YMCA전국연맹	02-735-4612	(사)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	02-720-7145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02-886-8522	(사)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	055-551-9413
(사)대한인명구조협회	02-975-1339	(사)대한안전연합	062-222-0841
(사)수상인명구조단	033-653-7913	(사)대한구조협회	054-476-2119
(사)한국해양구조협회	051-714-3695	(사)대한생활체육지도자연합회	02-394-1331 031-943-4447
(사)한국수상안전진흥협회	070-5057-3377	(사)복지와 건강	055-755-7800
(사)한국구조연합회	02-365-1112	(사)한국다이빙레스큐팀 * '18.11.10 이후 지정취소	063-221-9800
(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02-928-2258		
(사)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 '23.1.16. 이후 지정취소	051-404-0900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 '18.11.17~'22.6.19 미지정	02-422-6119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https://boat.kcg.go.kr) - 고객센터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확인

※ 지정취소 단체 자격증은 지정취소일 이전 자격증만 인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및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개정에 따라 인명구조요원(강사)에 대해서는 '25.12.21.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사람(갱신 포함)만 '28.12.20. 까지 자격을 인정(해양경찰청이 지정한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제도 폐지)

붙임 4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학력·경력(병역)·자격·면허 등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사항, 임용 결격사유,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자격증·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같은 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자	(2) 제공 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개인정보 (자격증·경력·학위 등) 확인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확인)	자격증, 경력,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 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 공동이용증적 보관)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해양경찰청 귀하

붙임 5 [현역]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전역신청 내용 확인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본인 소속 군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활용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자	(2) 제공 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소속 軍	공무원 채용 관리 (전역 가능 여부 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군별, 군번, 계급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최종 합격 시 전역 신청·미신청에 따른 처리 절차 확인 및 동의서

(1)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절차에 따라 군복무중인 현역 응시자에 한해 해양경찰교육원 입교일 전에 전역 가능 여부를 각 군 담당부서에 조회할 예정입니다.

(2) 최종합격이 결정된 현역 응시자는 각 소속 군에 규정된 전역신청절차에 따라 본인이 발표일로부터 **3일(공휴일 미포함) 이내**로 전역신청을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전역 신청기간 내에 전역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입교등록 및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차기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 **정당한 이유**에 대한 소명 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공휴일 미포함) 이내이며, 이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연락처 : 해양경찰청 인재선발계 (032-835-2736, 2436)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이해하였으며, 위 내용에 따라 전역 미신청이 확인될 경우 입교 등록 및 임용 포기자로 처리함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군별		군번		계급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해양경찰청 귀하

붙임 6 전공 인정과목 이수 확인서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성적증명서로 전문교과 이수 확인이 불가할 경우만 제출**

해수산계고 전문교과 이수 확인서

선발연도	2026	분야	해수산계고	추천직별	항해 또는 기관

추천 대상	기본 사항	학교명 00 고등학교	성명 인00
		학과명 00 학과	졸업(예정)일 0000.00.
	담당자	성명 박00	직장전화번호 000) 000-0000

추천 자격 확인	추천 요건	추천시점 기준으로 추천직별과 관련 있는 전문교과를 전문교과 총 이수단위의 50% 이상 이수한 자 (추천직별 관련 전문교과는 공고문 참조)			
	이수 단위 비율	**① (00) 교과(군) 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수** / ② 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수 × 100 = (86)단위 / (93)단위 × 100 = (92.5)%			
	③ 관련 전문 교과목	과목명	단위수	과목명	단위수
		0000	*4*		
		0000	*4*		
		0000	*6*		
		0000	*6*		
		0000	*10*		
		0000	*10*		
		0000	*10*		
		0000	*12*		
		0000	*12*		
		0000	*12*		
		합 계			*86*

위 사람은 해양경찰청 경찰공무원 해수산계고 경력경쟁채용과 관련된 ( ) 교과(군)의 전문교과를 총 이수단위의 50% 이상 이수한 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교명 직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유의사항

① 해수산계고 관련 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 추천 직별 별로 공고된 관련 교과(군)을 기재하고 해당하는 전문교과 총 이수단위를 기재

② 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 졸업예정자의 경우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전문교과 총 이수 단위수를 기재

③ 관련 전문 교과목 : 해수산계고 관련 전문교과 과목명 및 단위수를 기재하고 학기별 중복된 과목은 통합하여 기재

예) 2학년1학기 항해술 3단위 / 2학년 2학기 항해술 3단위일 경우 항해술 6단위를 기재

별첨 1 면접시험 가산자격증(인명구조요원) 관련 공지

□ 「수상레저안전법」개정('25.12.21. 시행)으로 인해 해양경찰청에서 지정한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현재는 해양경찰청에서 지정한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 따라서 인명구조요원(강사) 자격증은 '25.12.21.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사람(갱신 포함)만 '28.12.20. 까지 자격을 인정합니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표3] 인명구조(요원)강사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것만을 인정한다.

※ "해양경찰청 누리집 → 채용정보"에 게시된 「2026년 2차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상 (17페이지 하단) **지정취소 단체 자격증은 지정취소일 이전 자격증만 인정**한다.

□ 최종시험 예정일이 '26. 8. 7.인 경우 예시

① 최초발급 일자 : '24.8.15. / 유효기간 : '27.8.14.

⇒ 개정법령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으로 **가산자격증 인정**

② 최초발급 일자 : '23.3.20. / 유효기간 : '26.3.19.

⇒ 개정법령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이나, 유효기간이 도과되어 **가산자격증 불인정**

③ 최초발급 일자 : '26.3.20. / 유효기간 : '29.3.19.

⇒ 개정법령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자격증으로, **가산자격증 불인정**

④ 최초발급 일자 : '23.3.20. / 갱신 일자 : '26.4.20. / 유효기간 : '29.4.19.

⇒ 개정법령 시행일 이전에 자격증을 최초 취득하고 갱신한 자격증으로,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아 **가산자격증 인정**

※ **④의 경우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함(다만, 갱신 자격증에 최초 취득일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응시자는 최초 발급된 인명구조자격증 또는 갱신수료증 또는 자격증 발급기관에 "갱신 자격증"에 대한 확인증 요청(기관 별 발급방법 상이)으로 증빙해야 함.**

별첨 2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가능 병원

연번	병원명	시도	주소	전화번호
1	경희의료원	서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회기동)	02-958-8988
2	경찰병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 (가락동)	02-3400-1802
3	상계백병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342, (상계동)	02-950-1156
4	미즈메디병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295, (내발산동)	1588-2701
5	부민병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89, (등촌동)	1577-7582
6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 (신대방동)	1577-0075
7	성애병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53길 22, (신길동)	02-840-7383
8	씨엠병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6길 13, (영등포동4가)	070-4698-7888
9	청구성심병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873, (갈현동)	02-350-3281
10	동신병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72, (홍은동)	02-396-9161
11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36, (신림동)	02-1877-8875
12	이화의대부속서울병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60, (마곡동)	02-6986-2330
13	원자력병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75, (공릉동)	02-970-2114
14	희명병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244, (시흥동)	02-6712-0133
15	동부병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 124 (용두동)	02-920-9348
16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 262, (암남동)	051-990-6697
17	동아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26, (동대신동3가)	051-240-5310
18	대동병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87, (명륜동)	051-550-9300
19	동래봉생병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연로109번길 27, (안락동)	051-520-5850
20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거제동)	051-607-2179
21	영도병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85, (대교동2가)	051-419-7746
22	온종합병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19, (당감동)	051-607-0784
23	좋은강안병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93, (남천동)	051-610-9865 051-610-9873
24	부민병원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59, (덕천동)	051-330-3078
25	해운대부민병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84, (우동)	051-602-8130
26	해동병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133, (봉래동3가)	051-410-6600
27	좋은삼선병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326, (주례동)	051-310-9587
28	봉생기념병원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401, (좌천동)	051-664-4054
29	학교법인 춘해병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05, (범천동)	051-608-0270~1
30	학교법인 동의병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로 62, (양정동)	051-850-8763
31	부산보훈병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 (주례동)	051-601-6219
32	부산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아미동)	051-240-7493
33	경북대학교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 (삼덕동2가)	053-200-5791
34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 (대명동)	053-650-3534
35	영남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 (대명동)	053-620-3180

연번	병원명	시도	주소	전화번호
36	천주성삼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3190, (신매동)	053-790-1000
37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 (신당동)	053-258-4171
38	나사렛종합병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97, (진천동)	053-643-3800
39	대구가톨릭대학교(칠곡)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440, (읍내동)	053-320-2500
40	대구의료원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157, (중리동)	053-560-7387
41	대구파티마병원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99, (신암동)	053-1688-7770
42	드림종합병원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153, (대명동)	053-640-8800
43	대구보훈병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60, (도원동)	053-630-7094
44	나사렛국제병원	인천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98, (동춘동)	032-899-9999
45	부평세림병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75, (청천동)	032-524-0591
46	비에스종합병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충렬사로 31-0	032-290-0321
47	인천사랑병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726-0	032-457-2000
48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217, 217	032-580-6000
49	인천세종병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20, (작전동)	032-240-8000
50	인천적십자병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63	032-899-4000
51	인천힘찬종합병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72-0	032-1899-2220
52	현대유비스병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503-0	032-888-7575
53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56, (부평동)	032-280-6055
54	KS병원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 220, (수완동)	062-975-9314
55	광주기독병원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로 37, (양림동)	062-650-5572
56	광주병원		광주광역시 북구 면앙로139번길 51, (두암동)	062-260-7356
57	광주보훈병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산월동)	062-602-6301
58	광주센트럴병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 6-0, (신가동)	062-950-9797
59	광주일곡병원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309, (일곡동)	062-608-7575
60	광주한국병원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223, (쌍촌동)	062-380-3050
61	상무병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81-7, (치평동)	062-600-7224
62	서광병원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59번길 6, (금호동)	062-600-8060
63	운암한국병원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91, (운암동)	062-608-8232
64	건양대학교병원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 (관저동)	042-600-9999
65	대전한국병원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72	042-606-1450
66	대전성모병원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64, (대흥동)	042-220-9896
67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 (둔산동)	042-611-3763
68	대전보훈병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82번길 147, (신탄진동)	042-939-0427
69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대사동)	1599-7123(3번)
70	울산대학교병원	울산	울산광역시 동구 대학병원로 25, (전하동)	052-250-8340
71	서울산보람병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중평로 53,	052-255-7145
72	울산병원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171번길 13, (신정동)	052-259-5264
73	울산엘리야병원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285, (호계동)	052-290-2230

연번	병원명	시도	주소	전화번호
74	동강병원	울산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로 239, (태화동)	052-241-1471
75	동천동강병원		울산광역시 중구 외솔큰길 215, (남외동)	052-702-3550
76	울산시티병원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07, (연암동)	052-280-9200
77	좋은삼정병원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51, (무거동)	052-220-7679
78	중앙병원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72, (신정동)	052-226-1886
79	엔케이세종병원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61, (나성동)	044-850-7700
80	고대의대부속안산병원	경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 (고잔동)	031-412-4296
81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원천동)	1688-2118(2번)
82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 (지동)	031-249-8249
83	강남병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411, (신갈동)	031-300-0123
84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 69, (정자동)	031-888-0786
85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 안성시 남파로 95, (당왕동)	031-8046-5131
86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742, (관고동)	031-630-4259
87	광명성애병원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36, (철산동)	02-2680-7385
88	뉴대성병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91, (심곡동)	032-610-1165
89	대아의료재단한도병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103, (선부동)	031-8040-1339
90	성남시의료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171번길 10, (태평동)	031-738-7007
91	성남중앙병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476번길 12, (금광동)	031-799-5550
92	안성성모병원		경기도 안성시 시장길 58, (서인동)	031-675-6007
93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1, (산본동)	031-390-2741
94	시화병원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로 381, (정왕동)	031-5189-0293
95	동수원병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65, (우만동)	031-210-0285
96	화홍병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90번길 98, (호매실동)	031-8021-6858
97	단원병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 20, (초지동)	031-8040-5860
98	다니엘종합병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361, (약대동)	032-670-0230
99	굿모닝병원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338, (합정동)	031-5182-7649
100	김포우리병원		경기도 김포시 감암로 11, (걸포동)	031-999-1345
101	뉴고려병원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3로 283, (장기동)	031-980-9114
102	사랑의병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로 69, (성포동)	031-8084-0918
103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 87, (일동)	031-500-1182
104	메트로병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33번길 8, (안양동)	031-467-9984
105	조은오산병원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307, (오산동)	031-373-1806
106	차의과학대분당차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 (야탑동)	031-780-5050
107	안양샘병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9, (안양동)	031-463-4386
108	지샘병원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591, (당동)	031-389-3446
109	가톨릭대의정부성모병원		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 271, (금오동)	031-820-5334

연번	병원명	시도	주소	전화번호
110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경기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 142, (의정부동)	031-828-5000
111	경기도의료원포천병원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1648, (신읍동)	031-539-9114
112	의정부백병원		경기도 의정부시 금신로 322, (신곡동)	031-856-8111
113	현대병원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21, (진접읍)	031-528-9117
114	연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일산로 20-0, (일산동)	033-741-1670
115	강원대학교병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백령로 156, (효자동)	033-258-2000
116	강릉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007, (남문동)	033-610-1281
117	영월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1로 59, (영월읍)	033-370-9124
118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하평로 11, (평릉동)	033-530-3100
119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드미길 8, (장성동)	033-580-3151
120	강릉고려병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가로 30	033-649-0206
121	충북대학교병원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0	043-269-6566
122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충청북도 충주시 국원대로 82-0	043-840-8401
123	중앙제일병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로 36-0	043-533-1719
124	제천서울병원		충청북도 제천시 숭문로 57-0	043-642-7725
125	효성병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쇠내로 16-0	043-225-8522
126	옥천성모병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성왕로 1195-0	043-730-7072
127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0	043-249-2210
128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충청북도 충주시 안림로 239-50	043-871-0246
129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안서동)	041-550-6789
130	서산중앙병원		충청남도 서산시 수석산업로 5, (수석동)	041-661-1063
131	의료법인 백제병원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4번길 14, (취암동)	041-730-8985
132	보령아산병원		충청남도 보령시 죽성로 136, (죽정동)	041-930-5555
133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77, (웅진동)	041-962-1231
134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충청남도 서산시 중앙로 149, (석림동)	041-689-7000
135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홍성읍)	041-630-6177
136	대자인병원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90, (우아동3가)	063-240-2000
137	동군산병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로 149, (조촌동)	063-440-0300
138	전주병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한두평3길 13, (중화산동2가)	063-220-7200
139	익산병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왕로 969, (신동)	063-840-9114
140	정읍아산병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606-22, (용계동)	063-530-6000
141	예수병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중화산동1가)	063-230-8114
142	군산의료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의료원로 27, (지곡동)	063-472-5000

연번	병원명	시도	주소	전화번호
143	남원의료원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충정로 365, (고죽동)	063-620-1114
144	전주고려병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367, (산정동)	063-240-7300
145	광양사랑병원	전남	전라남도 광양시 공영로 71, (중동)	061-797-7240
146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1길 24, (조례동)	061-720-7133
147	나주종합병원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로 5419, 나주종합병원	061-330-6136
148	목포시의료원		전라남도 목포시 이로로 18, (용해동)	061-260-6472
149	빛가람종합병원		전라남도 나주시 정보화길 49-0, (빛가람동)	061-820-0855
150	여수전남병원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49, (광무동)	061-640-7157
151	여천전남병원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로 95, (선원동)	061-690-6284
152	영광종합병원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와룡로 3, (영광읍)	061-350-8196
153	영광기독병원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265, (영광읍)	061-350-3038
154	무안병원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몽탄로 65, (무안읍)	061-450-3134
155	목포중앙병원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623, (석현동)	061-280-3129
156	순천제일병원		전라남도 순천시 기적의도서관1길 3, (조례동)	061-720-3406
157	세안종합병원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795-2, (연산동)	061-260-6600
158	해남종합병원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45, (해남읍)	061-530-0131
159	광양서울병원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길 93, (마동)	061-798-9896
160	해남우리종합병원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597, (옥천면)	061-530-7171
161	목포한국병원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83, (상동)	061-270-5448
162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경북	경상북도 안동시 태사2길 55, (북문동)	054-850-6000
163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로 36, (용흥동)	054-247-0551
164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길 24, (모암동)	054-429-8114
165	동국대의과대학경주병원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87, (석장동)	054-748-9300
166	상주적십자병원		경상북도 상주시 상서문로 53, (남성동)	054-534-3501
167	안동성소병원		경상북도 안동시 서동문로 99, (금곡동)	054-850-8114
168	영주적십자병원		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 327-0, (가흥동)	054-630-0100
169	김천제일병원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1길 12, (신음동)	054-420-9300
170	문경제일병원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3길 25, (모전동)	054-550-7700
171	상주성모병원		경상북도 상주시 냉림서성길 7, (냉림동)	054-532-5001
172	의료법인 안동병원		경상북도 안동시 앙실로 11, (수상동)	054-840-1004
173	포항세명기독병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51, (대도동)	054-275-0005
174	차의과학대학부속구미차병원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10길 12, (형곡동)	054-450-9700
175	포항성모병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17, (대잠동)	054-272-0151
176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남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물금읍)	055-360-1280
177	강일병원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359, (구산동)	055-822-0100
178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1, (중앙동)	055-280-7619

연번	병원명	시도	주소	전화번호
179	베데스다복음병원	경남	경상남도 양산시 신기로 28, (신기동)	055-384-9901
180	연세에스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32번길 13, (이동)	055-548-7700
181	의료법인 거붕 백병원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5길 14, (상동동)	055-733-0000
182	맑은샘병원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거제대로 4477, (연초면)	055-731-1240
183	갑을장유병원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 167-13, (부곡동)	055-310-6000
184	김해복음병원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 33, (삼정동)	055-330-8888
185	청아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천서로 67	055-230-1500
186	에스엠지연세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76, (월남동2가)	055-243-0100
187	조은금강병원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1814-37, (삼계동)	055-330-0300
188	제일병원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885, (강남동)	055-750-7123
189	진주고려병원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2, (칠암동)	055-751-2500
190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 (성주동)	055-214-2000
191	창원파티마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45, (명서동)	055-270-1000
192	창원한마음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57번길 8, (사림동)	055-225-0000
193	한일병원		경상남도 진주시 범골로 17, (충무공동)	055-759-7777
194	마산의료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055-249-1234
195	중앙병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91-0	064-786-7280
196	한국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193, (삼도일동)	064-750-0720
197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아라일동)	064-717-1580
198	서귀포의료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장수로 47, (동홍동)	064-730-3465
199	제주한라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65, (연동)	064-740-5359

□ 색각경(아노말로스코프) 검사 가능 병원: 8개소

연번	병원명	주소	전화번호
1	경찰병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	02-3400-1269
2	공안과 병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37길 45	02-480-5000
3	공안과 의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02-733-5111
4	바른눈서울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02-6203-3377
5	인하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7	032-890-2114
6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길 82	031-787-2114
7	정근안과병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67	051-668-8000
8	전남대학교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	1899-0000

○ **색각 이상자의 경우,** 위 병원에서 색각경 검사(일명 아노말로스코프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가능 병원에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또한, 위 명시한 의료기관 외에 **색각경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면 색각 관련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